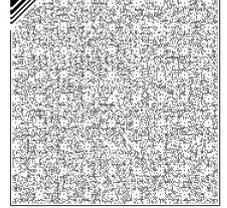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1. 관련 : 우리부 보험약제과-3455 (2023.8.24.)

2. 국민 건강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항상 감사합니다.

3. 우리부는 상기 관련 문서와 같이 '23.9.5.자로 약 7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3.9.5. 약가 인하 품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3.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히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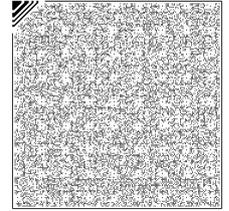
가. 적용대상 : 약가 인하 예정 품목(약 7천여개)

나. 적용기간 : 2023 9.5. ~ 11.4. (2개월)

다.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라. 협조요청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및 모니터링 강화
-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및 산하(보건소, 지부, 회원사 등)에 해당 내용 안내 및 협조요청.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험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식의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식의약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행정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건식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연구위원(을) **박진선** 방송통신사무 **관** 특별휴가 약무정책과장 전결 2023. 8. 25. **하태길**

협조자

시행 약무정책과-4109 (2023. 8. 25.)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88 팩스번호 044-202-3927 / sun9378@korea.kr / 부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